#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72 발의연월일: 2020. 7. 8.

발 의 자:서동용・홍정민・유정주

기동민 · 이형석 · 김회재

김정호 · 윤재갑 · 이탄희

김병욱 • 이병훈 • 강민정

권인숙 · 고영인 의원

(149])

## 제안이유

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 일 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취업 정보도 부족해, 정부·학교의 체계적 지 원이 없으면 취업 및 사회 안착에 큰 어려움이 있음.

고졸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 여건 악화,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 안전사고 이후 규정 강화에 따른 현장실습 기업 감소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임.

그 결과, 2019년 기준, 직업계고 학생 중 59%가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취업의 마중물인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약 29%(20 17년은 약 42%) 수준에 불과함. 코로나19 여파로 고졸채용 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.

현재 정부는 안전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연

결하기 위해 직업계고에 취업전담교사를 선정하고 취업지원관을 배치하며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(20년 6월)하는 등 중앙·교육청·학교의 취업지 원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.

이에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취업지원인력의 체계적·안정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설정을 도모하고자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교육부장관이 고졸자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의3).
- 나. 취업지원인력의 배치와 취업전담교사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취업전담교사 활동시간의 일부를 수업시간으로 인정함(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제1항 중 "시·도교육감"을 "교육부장관 및 시·도교육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시·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·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④ 시·도교육감이 설치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7조의4 및 제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4(취업전담교사 지정·운영) ① 시·도교육감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,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.
  - ②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취업지원 활동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.
  - ③ 취업전담교사 배치 기준,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 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- 제7조의5(취업지원인력 배치·운영) ① 시·도교육감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, 취업역량강화, 실습 및 취업처 발굴 등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인력을 채용·배치할 수 있다.
  - ② 취업지원인력의 선정, 배치 기준 등 취업지원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혅 행 아 제7조의3(취업지원센터 설치・운 제7조의3(취업지원센터 설치・운 영) ① <u>시·도교육감</u>은 「초· 영) ① 교육부장관 및<u>시·도</u> 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 교육감-----교의 현장실습 지원, 취업역량 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 치 · 운영할 수 있다. ② 시・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는 시 · 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 터를 설치할 수 있다. ③ 시・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 ③ 취업지원센터의 설치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 조례로 정한다. 는 시 · 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 터를 설치할 수 있다. <신 설> ④ 시·도교육감이 설치한 취 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 하다. <신 설> 제7조의4(취업전담교사 지정・운 영) ① 시·도교육감은 「초· 중등교육법 | 제2조에 따른 학 교의 현장실습 지원, 취업역량 <신 설>

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.

- ②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취업지원 활동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.
- ③ 취업전담교사 배치 기준,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제7조의5(취업지원인력 배치·운영) ① 시·도교육감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, 취업역량 강화, 실습 및 취업처 발굴 등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 단인력을 채용·배치할 수 있다.

② 취업지원인력의 선정, 배치기준 등 취업지원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